



Web Contents



2024년 05월 10일 02시 39분

830억대 목포소각장공사 단독입찰 인정... 정당성 논란” 보도에 대한 해명보도

2020.08.10 조회수 1292 등록자 김장원

광주일보 2020.8.10.일자 “830억대 목포소각장공사 단독입찰 인정... 정당성 논란”이라는 제하로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목포시가 830억대 대양동 소각장 공사 입찰을 놓고 단독입찰도 인정하기로 해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독입찰때 재공고를 함에도 목포시는 경쟁자없어도 이를 인정, 해당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에 대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조에 의거하여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관계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제7조(민간부분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제14항(주무관청은 제10항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기간 내에 다른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제안자를 협상대상자로 지정해야 한다.-재공고사항이 아님)의 규정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일반적으로 지방계약법에 따라 단독입찰때 재공고를 함에도 목포시는 경쟁자 없이도 이를 인정, 해당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벌인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내용은 사업시행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목록

이전글
삼학도 유람선크루즈 공연에 따른 해명자료

다음글
"하나노인복지관장놓고 불교계, 목포시 갈등"보...

MokPo - Si
Web Contents

